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률안 발의 시 기후영향평가서 제출〉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67호)

2025.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안)	1
II . 검토의견	3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지혜 · 김성환 · 이개호 · 박수현 · 박지원 · 이병진 ·

황명선 · 이재강 · 김 윤 · 이광희 의원(10인)

나. 발 의 일 : 2025. 7. 18.

다. 회 부 일 : 2025. 7. 21.

※ 의안번호 : 1156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 및 기후영향평가는 정부의 계획 수립 또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만 의무화되어 있을 뿐, 현행법상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법률 시행 이후에야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 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에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79조의4 신설).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의 발의¹⁾ 시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을 평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기후영향평가서 또는 기후영향평가 요구서(이하 “기후영향평가서 등”이라 함)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을 평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기후영향평가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기후영향평가서를 의장과 기후영향평가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

1) 의원발의 법률안 뿐만 아니라 위원회 제안,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도 적용됨.

현행	개정안
	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을 평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후영향평가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정부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평가서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자료를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현재,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법」²⁾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2)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법」 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별도의 평가 및 분석 등을 실시하는 절차가 없음.

이에 개정안은 법률안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법률안 심사를 가능하게 하여 법률안의 시행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재 발의되어 계류 중인 입법영향분석서 제출과 관련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⁴⁾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입법영향분석에는 환경적 영향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⁵⁾, 기후영향평가서를 별도로 도입할 것인지, 입법영향분석서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윤재옥의원안(2201696), 박성준의원안(2202611), 부승찬의원안(2202691, 2202692)

5) 유럽연합(EU),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의 영향평가에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이 포함됨(NARS 현안 분석,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입법조사처, 2018. 10. 23.)

둘째, 개정안은 법률안 발의 시 기후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기후영향평가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수 있어 입법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셋째, 전문성이 필요한 기후영향평가를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하도록 할 경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한 분석과 이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⁷⁾.

참고로, 법률안 발의 시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사례는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는 규제영향평가서⁸⁾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⁹⁾.

문 의 처

02)6788-5014

6) 법률안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2024. 10. 28.)에서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7)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국립기상과학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8) 프랑스는 ‘영향연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규제영향분석에 준하는 제도임.

9)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2025, 8. 14.)